

의 안 번 호	제 143 호
의 결 연 월 일	. . . (제 회)

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종갑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2년 11월 일

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종갑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2년 11월 14일

발 의 자 : 이종갑 · 박경숙 · 김꽃임 · 김국기 ·
이양섭 · 이의영 · 임병운 의원

1. 제안이유

- 조례에 인용된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『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』에 따라 문장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인용 법령의 명칭 중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이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으로 전부개정(시행 2020. 12. 10.)됨 따라 이를 바로잡고, 일부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(안 제2조)
- 『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』에 따라 문장 및 용어 등을 정비함 (안 제4조 ~ 안 제8조)
 - 약칭 사용 등 일부 용어를 정비함(안 제4조, 안 제5조)
 -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자구를 정비함(안 제7조)
 - 부수적·추가적인 내용을 후단으로 정비함(안 제8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 계 법 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생략(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4호)
- 협 의 : 충청북도 신성장산업국 신성장동력과
- 비 용 추 계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붙임)

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 다음 각 호와”를 “뜻은 다음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이란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”를 “이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이란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제2조제2호”를 “이란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2조제2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이란 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제2조제2호”를 “이란 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2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이란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제2조제1호”를 “이란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제2조제1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이란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제2조제1호”를 “이란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제1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이란「관광진흥법」제2조제1호”를 “이란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1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이란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제2조제1항제2호”를 “이란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2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호 중 “이란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”를 “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 중 “중「산업발전법」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”를 “중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0호 중 “이란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조제1항”을 “이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1항”으로

하고, 같은 조 제11호 중 “이란「지식재산 기본법」 제3조제3호”를 “이란 「지식재산 기본법」 제3조제3호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8호 중 “도”를 “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5조제1호 중 “충청북도와”를 “도 및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출연”을 “출연금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사업이나 시설 또는 업무를 과기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”을 “사업 또는 시설의 관리업무를 과기원에 위탁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포함하여야 한다”를 “포함한다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수 있으며,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, 회계, 재산에 관한 사항을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”를 “수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, 회계, 재산에 관한 사항을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뜻은 다음과 -----.
1. “지식산업”이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	1. -----이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-----.
2. “소프트웨어산업”이란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	2. -----이란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2조제2호----- -----.
3. “정보통신산업”이란 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	3. -----이란 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2호----- -----.
4. “방송통신산업”이란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산업을 말한다.	4. -----이란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제2조제1호----- -----.
5. “문화산업”이란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	5. -----이란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제1호----- -----.
6. “관광사업”이란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.	6. -----이란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1호----- -----.
7. “콘텐츠산업”이란 「콘텐츠산업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	7. -----이란 「콘텐츠산업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2호----- -----.
8. “중소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	8. -----이란 「중소기업기본

현행	개정안
법」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. 9. “첨단중소기업”이란 제8호의 중소기업 중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개발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말한다. 10. “벤처기업”이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. 11. “지식재산권”이란 「지식재산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. 제4조(사업) ① 과기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~ 7. (생략) 8. 국가, 도, 시·군 또는 관련 기관·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중소기업, 첨단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·진흥사업 9. (생략) ② (생략) 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 과기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	법」 제2조----- -. 9. ----- ----- 중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----- -----. 10. -----이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1항-----. 11. -----이란 「지식재산기본법」 제3조제3호-----. 제4조(사업) ①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---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----- ----- 9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1. 충청북도와 시·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 2. 국가의 출연 또는 지원금 3. 4. (생략) 제7조(업무의 위탁) ①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과기원의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<u>사업이나 시설 또는 업무를 과기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</u> ② (생략) ③ 제2항의 소요경비에는 사업 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과기원이 보유한 유·무형의 자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적인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 제8조(보고 및 검사)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기원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경영의 지도를 할 수 있으며, <u>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, 회계, 재산에 관한 사항을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.</u> <후단 신설> ② (생략)	1. 도 및 ----- 2. ----- 출연금 ----- 3. 4. (현행과 같음) 제7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사업 또는 시설의 관리업무를 과기원에 위탁할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포함한다. 제8조(보고 및 검사) ① ----- ----- 수 ----- -----이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, 회계, 재산에 관한 사항을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② (현행과 같음)

관련법령 발췌

□ 소프트웨어 진흥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확보,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소프트웨어”란 컴퓨터, 통신,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·제어·입력·처리·저장·출력·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·명령(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)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(記述書)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.
2. “소프트웨어산업”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, 제작, 생산, 유통, 운영 및 유지·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.

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 제4항제1호

○ 사 유

-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관계 법령 명칭 및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,
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
기술적인 정비 사항임
-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
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- 결론적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